

7.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정 : 1974. 3. 1.

개정(제17차) : 2020. 1. 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11장(학위의 수여) 및 제12장(명예박사학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가. 석사학위과정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5. 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승인받은 자.
단,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격 및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 5-1.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지침에 따라 학과의 내규로 정하고 대학원의 승인 후 시행한다.
 - 5-2. 석사과정 3학기 이상 이수자 중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제출하여 심사 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 재학연한(8학기) 최종 학기의 연구계획서 제출일까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승인 하에 대체실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는 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대체실적 미승인 시 학기연장은 불가하다.
 - 5-3. 학생이 제출한 학위논문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는 학과의 내규에 따라 3인 이상의 학과교수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학과의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심사해야 하며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6. 입학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박사학위과정

1.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30학점 이상)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5. 논문의 본심사에 합격한 자
6. 입학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석·박사 통합과정

1.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취득한 학점(54학점 이상)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5. 논문의 본심사에 합격한 자
6. 입학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과정이수를 중단하는 경우 대학원 내규가 정하는 석 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마. 대학원 학칙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

제3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대학원 학칙 제43조에 명시된 대로 과정별 및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과간 협동과정 이수자의 경우 세부전공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보고) <삭제>

제6조(학위수여 시기 및 횟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7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 및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 의결을 확정한다.
4. 명예박사학위는 우리 대학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학위기 양식) 우리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별표1]과 같다.

제9조(학위 취소 및 제적) ①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적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1974학년도 1학기부터 발효한다.
(경과조치) 1. 구제 박사학위수여자에 대하여는 본 내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본 내규는 제2조 나. 항 7호에 불구하고 1962년 제2학기부터 1973년 제2학기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에 학위수여 자격이 부여된다.
3. 1962년도 제1학기 및 그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본 내규 제2조 나. 항 7호에 불구하고 1974년도 제1학기말까지 학위수여 자격이 부여된다.
- ② 본 개정내규는 1976년도 제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 (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1991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1990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④ 본 개정내규 제4조 단서는 1994학년도 제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7조 및 제8조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는 199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제2조)는 1995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⑥ 이 개정내규(제2조 “가”의 “5”)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개정내규(제2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이 개정내규(제5조, 제8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⑪ 이 개정내규(제2조, 제7조)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⑫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⑬ 이 개정내규(제8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⑭ 이 개정내규(제2조 라항 신설, 마항)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⑮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8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⑯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9조 신설)는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⑰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8조 [별표1])는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⑱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가항 5호)는 2018학년도 입학생 적용한다.
- ⑲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5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